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2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3일

3.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존 ‘녹색제품’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와 이와 관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내용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나. 녹색제품구매촉진 협의회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안 제6조)

다.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및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안 제8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마. 제15조 기관 평가 및 제1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5. 검토내용

○ 안 제2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녹색

제품' 개념에 대해 포괄적 구체화함.

-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내용을 정비함.
- 안 제7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의 설정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안 제8조는 홈페이지와 공보 동시 게재는 불필요하여 공보 게재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
- 안 제11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함.
- 안 제15조는 별도로 조례에 평가를 두는 것은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안 제1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은 별도 실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3. 8. ~ '23. 3.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녹색제품’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가 필요하고,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이행을 정부 시책에 맞게 기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